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처 폐지 등에 따른 소관 사무 및 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사무처의 소관 사무는 대통령실장이 이를 승계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사무처 소속 공무원(정무직은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으로 본다.

◇국민경제자문회의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경제의 발전전략수립 및 국민복지증진을 위한 대통령 보좌기능을 강화하고 조직을 슬림화하며 권한·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자문회의사무처 기능을 대통령실에 이관하고,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

2008년 2월 2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재정경제부장관 권오규

국무위원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

●법률 제8863호

金融監督機構의設置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

金融監督機構의設置등에관한法律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金融監督機構의設置등에관한法律”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조 중 “金融監督委員會”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건전한 信用秩序와 공정한 金融去來慣行을 확립하고”를 “금융산업의 선진화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을 확립하며”로 한다.

제2조 중 “金融監督委員會”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장의 제목 “金融監督委員會”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절의 제목 “金融監督委員會의 設置”를 “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金融監督委員會의 設置 및 地位)”를 “(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金融監督業務”를 “금융정책,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 및 금융감독에 관한 업무”로, “金融監督委員會”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金融監督委員會는”을 “금융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서”로 한다.

제4조의 제목 “(金融監督委員會의 구성)”을 “(금융위원회의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金融監督委員會”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한다.

1. 기획재정부 차관
2. 금융감독원 원장
3. 예금보험공사 사장
4. 한국은행 부총재
5.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금융전문가 2인

6.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천하는 경제계대표 1인

제4조제2항 중 “金融監督委員會”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國務會議의 審議를 거쳐”를 “국무총리의 제청으로”로, “財政經濟部長官”을 “위원장”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第1項第4號 내지 第7號”를 “제1항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第1項第4號·第6號 및 第7號”를 “제1항제6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위원장·부위원장·제1항제5호의 위원 및 제15조에 따른 사무처의 장은 「정부조직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정부위원이 된다.

⑥ 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5조제1항 중 “金融監督委員會”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副委員長, 第4條第1項第5號의 委員의 順位로 委員長의 職務를 代行하며 副委員長, 第4條第1項第5號의 委員이”를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부위원장이”로, “金融監督委員會”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第4條第1項第4號 내지 第7號”를 “제4조제1항제5호 및 제6호”로 한다.

제7조 중 “第6條”를 “제22조”로 한다.

제9조제3호 단서를 삭제한다.

제10조제1항제3호 중 “金融監督委員會”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절의 제목 “金融監督委員會의 운영”을 “금융위원회의 운영”으로 한다.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金融監督委員會”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위원인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예·결산 및 정관변경 등에 관한 사항

⑤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장은 이 기피신청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⑥ 위원 본인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제5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⑦ 금융감독원장은 위원장에게 제37조에서 규정한 금융감독원 업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안건의 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 중 “金融監督委員會”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 중 “金融監督委員會”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金融監督에 관한 緊急措置”를 “긴급조치”로, “金融監督委員會”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4조제2항 및 제3항 중 “金融監督委員會”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組織等”)을 (“사무처의 설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금융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사무처를 두며, 이 법에 규정된 것 이외에 금융위원회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및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소속으로 두는 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예산 및 기타 행정사무를 총괄한다.

제16조 중 “金融監督委員會”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절의 제목 “金融監督委員會의 所管事務”를 “금융위원회의 소관사무 등”으로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금융위원회의 소관사무) 금융위원회의 소관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융에 관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2. 금융기관 감독 및 검사·제재에 관한 사항
3. 금융기관의 설립, 합병, 전환, 영업 양수·도 및 경영 등의 인·허가에 관한 사항
4. 자본시장의 관리·감독 및 감시 등에 관한 사항
5. 금융중심지의 조성·발전에 관한 사항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에 관련된 법령 및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7. 금융 및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관한 양자·다자간 협상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8.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금융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사항

제18조의 제목“(金融監督院에 대한 指示·監督)”을“(금융감독원에 대한 지도·감독)”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金融監督委員會”를“금융위원회”로,“指示·監督”을“지도·감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제5호 중“指示·監督”을“지

도·감독”으로 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金融監督委員會”를“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9조제1호 중“證券·파생상품시장”을“자본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金融監督委員會가 審議·議決하는 證券·파생상품시장”을“금융위원회 소관사무 중 자본시장”으로 한다.

제19조제4호 중“證券·파생상품 시장”을“자본시장”으로,“金融監督委員會”를“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金融監督委員會”를 각각“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1조제3항 중“第11條第4項·第12條 및 第13條의 規定은”을“제11조 제4항제1호 및 제2호, 같은 조 제5항·제6항, 제12조 및 제13조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11조제5항 및 제12조·제13조의“금융위원회”는“증권선물위원회”로 본다.

제22조제1항 및 제3항 중“金融監督委員會”를 각각“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3조의 제목“(金融監督院에 대한 指示·監督)”을“(금융감독원에 대한 지도·감독)”으로 하고, 같은 조 중“指示·監督”을“지도·감독”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金融監督委員會”를 “금융위원회”로, “指示”를 “지도·감독”으로 한다.

제26조제2항 중 “金融監督委員會”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9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금융감독원의 부원장(이하 “부원장”이라 한다)은 원장의 제청으로 금융위원회가 임명하고, 금융감독원의 부원장보(이하 “부원장보”라 한다)는 원장이 임명한다.

제29조제4항 중 “金融監督委員會”를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6항 중 “副院長·副院長補”를 각각 “원장·부원장·부원장보”로 한다.

제30조제2항 중 “金融監督委員會 委員長의 職務를 代行하는 金融監督委員會 委員”을 “금융감독원의 정관이 정하는 순서에 따른 부원장”으로 한다.

제31조 중 “金融監督委員會 委員長의 職務를 代行하는 金融監督委員會 委員”을 “금융감독원의 정관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 직무를 대행하는 부원장”으로 한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32條(원장등의 해임) ① 원장 및 감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해임한다.

1.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이 법 기타 금융관계법령(외국의 금융관계 법령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의 집행이 심히 곤란하게 된 경우
4. 이 법 또는 이법에 의한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② 부원장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장의 제청으로 금융위원회가 해임한다.

③ 부원장보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장이 해임한다.

제34조 중 “副院長·副院長補”를 “원장·부원장·부원장보”로 한다.

제37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금융위원회 및 소속기관에 대한 업무지원

제3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금융감독원은 제1항의 규칙을 제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규칙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42조 및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金融監督委員會”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8조 및 제50조 중 “金融監督委員會”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장의 제목 “金融監督機構 상호간 및 다른 機關과의 관계”를 “보칙 및 벌칙”으로 한다.

제58조 앞에 “第1節 金融監督委員會와 金融監督院과의 관계”를 삭제한다.

제58조부터 제60조까지 중 “金融監督委員會”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61조의 제목 “(金融監督委員會등의 命令權등)”을 “(금융위원회등의 命令權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항 중 “金融監督委員會”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중 “指示·監督”을 “지도·감독”으로 한다.

제62조 앞에 “第2節 金融監督委員會와 韓國銀行과의 관계”를 삭제한다.

제63조를 삭제한다.

제62조 다음에 “第3節 金融監督委員會와 財政經濟部등과의 관계”를 삭제한다.

제64조의2를 삭제한다.

제65조 중 “財政經濟部長官과 金融通貨委員會 및 金融監督委員會”를 “기획재정부장관과 금융위원회 및 금융통화위원회”로 한다.

제6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5조의2(관계기관등의 장의 협조) ① 금융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사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시정조치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의뢰할 수 있다.

제66조제1항 중 “金融監督委員會 또는 金融監督院”을 “금융감독원”으로 한다.

제67조 다음에 “第5章 補則”을 삭제한다.

제69조제1항 및 제70조 중 “金融監督委員會”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7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1조(권한의 위탁) 금융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는 금융감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다른 권한의 일부를 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폐지 및 신설에 따른 소관사무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정부조직법」 제27조의 재정경제부장관 소관 사무 중 금융 및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해당하는 사무와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금융감독위원회의 사무(이하 이 조에서 “금융위원회승계사무”라 한다)는 금융위원회가 각각 승계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금융위원회승계사무와 관련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행한 인가 그 밖의 행위와 각종 신고 그 밖에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행위 또는 금융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정경제부 소속 공무원 중 금융 및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해당하는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 및 금융정보분석원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금융감독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제4조(금융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제4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로 임명되는 금융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명은 이 법 시행일 이후 1개월 이내에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의해 임명된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은 이 법에 따라 새로이 금융위원회 위원이 임명될 때까지는 이 법 제4조제2항·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금융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의해 임명된 금융감독원의 부원장·부원장보 및 감사는 그 임기가 만료되는 때까지 이 법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예금자보호법」 제9조 및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위촉·임명된 예금보험위원회 위원 및 경영관리위원회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되는 때까지 같은 법 같은 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임명된 위원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예금자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가목·다목, 제35조의8제3항, 제36조의2제1항·제2항 및 제38조제1항제3호 중 “金融監督委員會”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제6조제2항, 제23조, 제34조제2항, 제35조의4, 제36조의3제1항, 제36조의4제2항·제4항 및 제36조의7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財政經濟部長官”을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며, 제9조제1항제13호, 제11조제3항·제4항 중 “財政經濟部長官이”를 각각 “금융위원회가”로 하고, 제11조제2항 중 “財政經濟部長官”을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9인”을 “7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財政經濟部次官”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3호 중 “金融監督委員會 委員長 및 韓國銀行 總裁”를 “한국은행 총재”로, “3인”을 “2인”으로 한다.

제15조의3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제21조제3항 중 “金融監督機構의設置등에관한法律”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金融監督委員會”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5조제3호, 제36조의5제1항 및 제44조제2항 중 “財政經濟部長官

이”를 각각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6조의2제2항 및 제44조제3항 중 “財政經濟部長官에게”를 각각 “금융위원회에”로 한다.

제27조제1항·제2항 및 제44조제4항·제5항 중 “財政經濟部長官은”을 각각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財政經濟部長官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제33조제2항 중 “金融監督委員會”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법률 제6807호 預金者保護法中改正法律 부칙 제10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②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제25조제2항, 제30조제3항, 제42조제2항 및 제47조 중 “金融監督委員會”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1人”을 “9인”으로, 같은 항 제2호 중 “金融業務를 담당하는 재정경제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에서 財政經濟部長官이 지정하는 者 1人”을 “금융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에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자 1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財政經濟部長官”을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金融監督委員會가”를 “금융위원회가”로 하며, 같은 항 제8호가목 중 “辯護士”를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나목을 삭제한다.

제17조제2항 및 제4항 중 “金融監督委員會”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0조제5항 중 “金融監督委員會”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8조제1항 중 “金融監督委員會”를 “금융위원회”로, “金融監督院長”을 “소속 공무원 또는 금융감독원의 소속 직원”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검사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法律 第5371號 金融機關不實資產등의효율적처리및成業公社의設立에 관한法律 부칙 제2조제5항 단서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③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다목, 제4조제1항·제3항·제4항·제5항, 제7조제1

항·제2항,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1조제1항·제4항·제5항·제6항제1호, 제12조제1항·제3항, 제13조제3호, 제13조의2 각 호, 제14조제1항·제2항·제5항·제7항·제8항, 제14조의2제5항, 제14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4조의4, 제14조의6제1항·제2항, 제14조의7제1항, 제15조제1항·제2항, 제16조제1항·제2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3항, 제25조제2항 및 제2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중 “金融監督委員會”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조제6호가목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조제6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4조제4항부터 제9항까지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4조의3제1항 및 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7조제4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8조제1항제2호·제5호·제7호·제12호 및 제15호 중 “금융감독

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법률 제8265호 金融産業의構造改善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5조제2항·제6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④ 금융지주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 제5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 제6조의2제1항·제2항, 제7조제1항제3호·제2항, 제7조의2제1항·제2항,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8조의2제2항·제3항, 제8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4항제1호·제5항, 제10조제2항, 제1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5항,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7조제2항,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1조의4제1항, 제43조제3항, 제43조의2제2항·제3항, 제45조제4항, 제45조의2제5항, 제45조의3제1항·제4항, 제45조의5제1항·제2항, 제48조제2항·제3항, 제48조의2제5항, 제49조제1항·제2항 및 제50조제1항·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51조제5항 중 “금융감독위원회규정”을 “금융위원회규정”으로,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51조의2제1항·제2항, 제54조제2항, 제55조, 제55조의2, 제56조, 제

57조제1항·제2항, 제58조제1항, 제59조, 제60조제1항·제2항, 제61조, 제62조의2제4항, 제63조, 제64조, 제65조제1항·제2항, 제66조제1항·제2항, 제67조제1항·제2항, 제6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9조의2제1항·제3항, 제70조제2항제1호의2 및 제72조제1항제2호·제5호·제3항·제4항·제5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⑤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金融監督委員會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의2, 제3호 및 제4호 중 “金融監督委員會”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金融監督委員會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 중 “金融監督委員會”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조의2제1항 중 “金融監督委員會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3조의3 중 “金融監督委員會”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조 중 “金融監督委員會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金融監督委員會”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金融監督委員會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金融監督委員會”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金融監督委員會”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金融監督委員會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11조제1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金融監督委員會”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3조 중 “金融監督委員會”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5조제6항 단서 중 “金融監督委員會”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6조제3항 및 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6조의3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6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金融監督委員會”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7조의2제4항 중 “金融監督委員會”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0조 중 “金融監督委員會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21조 중 “金融監督委員會”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金融監督委員會”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金融監督委員會”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3조 중 “金融監督委員會”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金融監督委員會”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6조제2항 중 “金融監督委員會”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7조제4항 중 “金融監督委員會”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7조의2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7조의4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27조의5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7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

다.

제27조의7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0조제1항제2호의3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의4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金融監督委員會”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㉔ 증권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항제8호나목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16항 중 “財政經濟部令”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金融監督委員會”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조 전단 중 “金融監督委員會”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5조 중 “金融監督委員會”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6조 중 “金融監督委員會”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財政經濟部令”을 “총리령”으로, “金融監督委員會”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財政經濟部令”을 “총리령”으로, “金融監督委員會”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金融監督委員會”를 “금융위원회”로, “財政經濟部令”을 “총리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金融監督委員會”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金融監督委員會”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財政經濟部令”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財政經濟部令”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17조 중 “金融監督委員會”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8조 본문 중 “金融監督委員會”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金融監督委員會”를 “금융위원회”로,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金融監督委員會의 處分權)”을 “(금융위원회의 처분권)”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金融監督委員會”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金融監督委員會”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1조제4항 중 “財政經濟部令”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21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공휴일(「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포함하

다) 그 밖의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날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다음날에 제출할 수 있다”를 “공휴일(「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포함한다) 그 밖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날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다음날에 제출할 수 있다”로 한다.

제21조의3 중 “金融監督委員會”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3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財政經濟部令”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24조의2제2항 중 “金融監督委員會”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5조 후단 중 “金融監督委員會”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6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7조 중 “金融監督委員會”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의2(준용규정) 제17조·제19조 및 제20조는 공개매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조 중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와 거래소”로 본다.

제28조제1항 중 “金融監督委員會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金融監督委員會”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8조의2제1항 중 “金融監督委員會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전단 및 제7항 중 “金融監督委員會”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0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중 “金融監督委員會”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金融監督委員會”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2조의2 중 “金融監督委員會”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2조의3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5조제1항 전단 중 “金融監督委員會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金融監督委員會”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金融監督委員會”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金融監督委員會”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9조제3항 중 “金融監督委員會”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50조제1항 중 “金融監督委員會”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51조제1항제2호 중 “金融監督委員會”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

은 조 제2항 중 “金融監督委員會의”를 각각 “금융위원회의”로, “金融監督委員會”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52조의5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53조제4항 전단 중 “金融監督委員會”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金融監督委員會·「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항 중 “金融監督委員會”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54조의 제목 (“금융감독위원회의 명령권”)을 (“금융위원회의 명령권”)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54조의2제2항 및 제3항 중 “金融監督委員會”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54조의3제4항부터 제7항까지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54조의4제4항제1호가목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한”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

융위원회”로 한다.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金融監督委員會”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중 “金融監督委員會”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57조의2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07조제3항 중 “財政經濟部令”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112조제1항 및 제3항 중 “金融監督委員會”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15조제1항 전단 중 “金融監督委員會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117조제2항 중 “財政經濟部長官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제145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財政經濟部長官에게”를 “금융위원회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 “財政經濟部長官이”를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제147조제1항제10호 중 “財政經濟部長官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151조제1항 및 제2항 중 “金融監督委員會”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53조 중 “金融監督委員會”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5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金融監督委員會”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58조 중 “財政經濟部長官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161조제1항 및 제2항 중 “財政經濟部令”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164조제1항 중 “金融監督委員會”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金融監督委員會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16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金融監督委員會”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73조의6제2항 중 “財政經濟部長官”을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73조의8제1항 및 제2항 중 “財政經濟部令”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174조제3항제3호 중 “財政經濟部令”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174조의2제1항제3호 중 “財政經濟部令”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174조의4제3항 중 “財政經濟部令”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174조의6제5항제2호 중 “金融監督委員會”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74조의10제1항 전단 중 “財政經濟部令”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175조 중 “金融監督委員會”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79조제1항 중 “金融監督委員會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180조제1항 및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81조제1항 중 “財政經濟部長官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1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및 제5항 전단 중 “金融監督委員會”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86조의2제1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및 제5항 중 “金融監督委員會”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86조의3 중 “金融監督委員會”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88조제1항 중 “財政經濟部令”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188조의2제2항 중 “財政經濟部令”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189조의2제3항 중 “金融監督委員會”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89조의4제5항 후단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및 제9항 중 “金融監督委員會”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90조의2제1항 전단 중 “金融監督委員會”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91조제3항 단서 중 “金融監督委員會”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91조의2제1항제1호 중 “財政經濟部令”을 “총리령”으로 하고, 같

은 항 제2호 중 “金融監督委員會”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91조의7제3항 중 “財政經濟部長官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제191조의10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191조의16제6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9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金融監督委員會”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93조 중 “金融監督委員會”를 “금융위원회”로, “金融監督委員會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194조의2 중 “금융감독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를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로 한다.

제194조의3제1항 본문 및 제2항 중 “金融監督委員會”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00조제1항제1호 중 “金融監督委員會”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金融監督委員會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金融監督委員會”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00조의2제1항 전단, 제4항 및 제5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金融監督委員會”를 “금융위

위원회”로 한다.

제200조의3제1항 중 “金融監督委員會”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03조제3항 중 “金融監督委員會”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06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金融監督委員會”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金融監督委員會”를 “금융위원회”로, “金融監督委員會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206조의3의 제목 “(金融監督委員會 및 證券先物委員會의 조사, 압수·수색)”을 “(금융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사, 압수·수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金融監督委員會”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金融監督委員會”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金融監督委員會”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金融監督委員會”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金融監督委員會”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06조의4제1항 중 “金融監督委員會”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金融監督委員會”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후단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06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중 “金融監督委員會”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마목 중 “金融監督委員會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金融監督委員會”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06조의6 중 “金融監督委員會”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06조의7 각 호 외의 부분 중 “金融監督委員會”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06조의8제1항제2호 중 “金融監督委員會”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06조의10 각 호 외의 부분 중 “財政經濟部長官 또는 金融監督委員會”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06조의1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金融監督委員會”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06조의1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金融監督委員會”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06조의13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金融監督委員會”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06조의14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金融監督委員會”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06조의1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金融監督委員會”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金融監督委員會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206조의16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金融監督委員會”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08조제4호 중 “金融監督委員會”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10조제1호 중 “金融監督委員會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213조제1항제4호의2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의4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金融監督委員會”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⑦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및 같은 항 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6조제1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8조제4항제1호가목 및 라목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7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8조제4항제3호 및 제7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각각 “총리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각각 “총리령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4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6조의 제목 “(금융감독위원회의 자료 제출명령)”을 “(금융위원회의 자료 제출명령)”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1조제1항,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51조제1항제1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제4항 및 제5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5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후단 및 제6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78조제1항제1호나목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한다.

제80조제3항 후단 및 제4항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각각 “총리령으로”로 한다.

제81조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87조제6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90조제1항,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93조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9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후단 및 제6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00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01조제1항,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10조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12조제6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14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후단 및 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16조제3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19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20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22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23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한다.

제128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29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31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3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33조제5항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한다.

제1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공휴일(「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포함한다), 그 밖에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제출할 수 있다”를 “공휴일(「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

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포함한다),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제출할 수 있다”로 한다.

제136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37조제1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한다.

제138조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39조제2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43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4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45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46조제1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47조제1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

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49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50조제1항 및 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51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53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한다.

제155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56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57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58조제1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59조제1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및 제5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60조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항, 제4항 전단 및 제5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63조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64조제1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67조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68조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69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82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항 및 제8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90조제3항 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191조제3항 단서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

다.

제192조제1항 본문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93조제5항 전단 및 제6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0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후단 및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03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5항 후단 및 제6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06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로”를 ““금융위원회”로”로,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12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17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35조제2항 단서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한다.

제238조제8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39조제6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40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후단 및 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43조제1항 및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47조제3항 본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한다.

제248조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

로 한다.

제2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54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57조제1항,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58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

로 한다.

제262조제1항,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63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67조제1항,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68조제3항, 제5항 및 제6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항 및 제10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70조제3항 단서, 제4항 단서 및 제5항 단서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금융감

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272조제7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27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76조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7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79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81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

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87조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290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9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99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301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05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0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09조제3항제3호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한다.

제310조제1항제3호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한다.

제312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한다.

제314조제5항제2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18조제1항 전단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한다.

제319조제8항 전단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한다.

제323조제1항 및 제2항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각각 “총리령으로”

로 한다.

제324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금융위원회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금융위원회에”로 하며, 같은 항 후단 및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각각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제326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제6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의”를 각각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330조제1항 및 제2항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각각 “총리령으로”로 한다.

제331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을 “증권금융회사의 경영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32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고, 같

은 조 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제333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금융위원회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제331조제2항에 따른 감독업무와 관련된 규정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에게”를 “금융위원회에”로 한다.

제3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3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337조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339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42조제6항 단서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43조제3항 및 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제8항 및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44조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45조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48조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349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55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후단 및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60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후단 및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65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

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70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금융위원회에”로 한다.

제3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376조제2항 전단 중 “재정경제부장관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제380조제4항 전단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제392조제3항 및 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02조제2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1인”을 “2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전단 및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06조제1항제2호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0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08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409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10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12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413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제414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15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16조의 제목 “(금융감독위원회의 조치명령권)”을 “(금융위원회의 조치명령권)”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19조제4항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전단 및 제9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본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24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25조제1항 및 제2항 본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26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8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27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28조제1항 및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31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432조제1항 및 제2항 본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4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35조제1항 및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제4항 및 제7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36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37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제172조)”를 “금융위원회(제172조)”로 하고, 같은 항 후단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거래소는 외국 거래소와 정보교환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래소는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인에게 공개된 정보를 교환하는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거래소가 제5항에 따라 정보교환을 하는 경우에는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3항 중 “금융위원회”를 각각 “거래소”로 보며, “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을 각각 “외국 거래소”로, “조사 또는 검사”는 각각 “심리 또는 감리”로 본다.

제438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3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나목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40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41조제1호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442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45조제48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46조제24호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449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제10항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제1항, 제2항 전단, 제4항 및 제5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6조제2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7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

금융위원회”로 한다.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14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18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8조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9조제1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30조제1항 본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32조제1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35조제1항 전단 중 “재정경제부장관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37조제1

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38조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각각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39조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42조제58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42조제59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42조제60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42조제6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42조제6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42조제 6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42조제 65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17호, 제151호 및 제298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별표 3 제11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별표 4 제11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별표 5 제12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별표 9 제11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하며, 제12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별표 15의 제목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⑧ 선물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 중 “金融監督委員會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31조의2제2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32조 중 “金融監督委員會”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5조제3항 중 “金融監督委員會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37조제1항 및 제3항 중 “金融監督委員會의”를 각각 “금융위원회

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金融監督委員會”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8조의2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8조의3제3항부터 제6항까지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8조의4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9조 중 “金融監督委員會”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金融監督委員會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4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6조 중 “金融監督委員會”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8조제4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49조 중 “金融監督委員會”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75조제1항 및 제3항 중 “金融監督委員會의”를 각각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77조제2항 중 “金融監督委員會”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81조제1항 중 “金融監督委員會”를 “금융위원회”로,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金融監督委員會”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81조의2의 제목 “(金融監督委員會 및 證券先物委員會의 調査)”를 “(금융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金融監督委員會”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金融監督委員會”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金融監督委員會”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金融監督委員會”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金融監督委員會”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金融監督委員會”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8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金融監督委員會”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84조의2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85조제1항 중 “金融監督委員會”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86조 중 “財政經濟部長官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제87조 중 “財政經濟部長官 또는 金融監督委員會”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93조제1항 및 제2항 중 “金融監督委員會”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94조 중 “金融監督委員會”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95조제1항 중 “金融監督委員會”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財政經濟部長官 또는 金融監督委員會”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金融監督委員會”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9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金融監督委員會”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金融監督委員會”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95조의3 중 “金融監督委員會”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95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중 “金融監督委員會”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95조의6의 제목 “(金融監督委員會·證券先物委員會 및 金融監督院의 委員·職員 등의 去來制限)”을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위원·직원 등의 거래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金融監督委員會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95조의7제1항 중 “金融監督委員會”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金融監督委員會”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95조의8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95조의9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95조의10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95조의11제1항 및 제2항 본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95조의1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95조의1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98조제6호 중 “金融監督委員會”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01조제1항제2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金融監督委員會”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⑨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6호, 제4조제1항, 제5조의2제1항·제2항, 제6조제1항부터 제

5항까지, 제11조제4항제1호라목 및 같은 항 제3호·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 제14조제1항제4호·제2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3항·제4항·제6항·제7항, 제16조의2제2항, 제17조제1항·제2항·제4항, 제1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 제29조제1항·제3항, 제30조제2항·제3항, 제31조제1항·제4항, 제32조, 제4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제6항, 제42조제1항·제2항, 제56조제3항, 제57조제2항, 제70조제3항, 제73조제3항, 제94조제6항, 제96조제3항, 제97조제1항·제3항, 제98조제2항, 제99조제2항, 제100조제5항, 제104조제2항, 제105조제1항·제5항, 제108조제1항, 제111조제1항·제11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13조, 제114조제2항, 제115조, 제117조제2항, 제118조 제목·제1항·제2항, 제120조, 제123조제2항, 제1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26조, 제131조제4항·제5항, 제144조제3항, 제144조의6제1항·제2항, 제144조의7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144조의11제4항·제5항, 제144조의12제3항, 제144조의16제3항·제4항, 제144조의17제2항, 제145조제1항, 제146조제1항, 제14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0조제1항, 제152조, 제154조제1항, 제155조제1항, 제156조제1항·제6항·제8항, 제159조제1항, 제160조제3항, 제163조제2항 및 제3항, 제166조제1항·제2항·제5항·제6항, 제167조제1항·제2항, 제168조, 제168조의2제1항, 제169조, 제170조제

1항·제2항, 제171조, 제172조제1항·제2항, 제17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74조, 제175조제2항, 제178조, 제181조제1항, 제181조의2, 제181조의3제2항, 제181조의4제1항·제2항, 제181조의5제1항·제2항, 제181조의6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1조의7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4조제24호부터 제26호까지, 제18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법률 제6987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부칙 제15조제2항 및 제17조, 법률 제8516호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2항·제3항의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하고, 제11조제4항제1호 가목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관”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으로 하며, 제15조제2항제1호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로 하고, 제62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하며, 제88조제1항제3호 가목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하고, 제90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하고, 제114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하며, 제132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

리령”으로 한다.

⑩ 資産流動化에관한法律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너목 중 “金融監督委員會”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조제1항 전단 및 제3항 중 “金融監督委員會”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金融監督委員會”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제3항제6호, 제4항 및 제5항 중 “金融監督委員會”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金融監督委員會”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金融監督委員會”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6조 중 “金融監督機構의設置등에관한法律”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4조 중 “金融監督委員會”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5조 중 “金融監督委員會”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金融監督委員會”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金融監督委員會”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⑪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항제5호 중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조제2항 전단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제8조제4항 전단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제11조제4항제1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6조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7조제2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1인”을 “2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제16조제3항 및 제4항”을 “제16조제3항”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제16조제3항 및 제4항”을 “제16조제3항”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3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⑫ 공사채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金融監督委員會”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조 중 “金融監督委員會”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조제4항 중 “財政經濟部令”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9조 중 “財政經濟部令”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財政經濟部令”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11조 중 “金融監督委員會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金融監督委員會”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5조 중 “金融監督委員會”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5조의2 중 “金融監督委員會”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9조제3항 중 “金融監督委員會”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2조제6호, 제29조제3항, 제30조제1항 및 제30조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⑭ 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호, 제4조제1항·제4항, 제5조, 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1조제1항제2호, 제12조제4항, 제13조제1항제7호, 제17조제4항제1호·제3호·제8항, 제20조제3항, 제33조제1항, 제74조제1항·제2항, 제77조제1항, 제84조제1항, 제8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87조제1항·제3항, 제88조제1항, 제89조제1항·제3항, 제90조제1항, 제93조제1항·제3항, 제95조제2항·제3항, 제99조제1항제1호, 제100조제4항, 제105조제1항제6호, 제107조 단서·제2호, 제108조제1항제4호, 제109조 단서, 제110조제3항, 제111조제3항·제4항 및 제6항, 제112조, 제115조제1항, 제116조제3호, 제117조제1항·제2항, 제118조제1항·제2항, 제119조, 제120조제3항, 제122조, 제123조제2항, 제124조제1항·제2항·제5항 및 제6항, 제1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26조, 제127조제1항·제2항, 제128조, 제130조, 제131조의 제목·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33조제1항·제5항, 제134조제1

항·제2항, 제135조제1항, 제137조제2항, 제139조, 제140조제2항 단서, 제144조제1항 단서·제3항 단서, 제150조, 제155조, 제156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6항, 제157조, 제159조, 제160조, 제161조제1항, 제162조제1항·제2항 및 제4항, 제163조제1항, 제164조, 제169조제1항, 제171조제1항, 제176조제1항·제4항 및 제6항, 제182조제1항, 제183조제1항, 제184조제1항·제3항제4호·제5항, 제185조, 제186조제1항, 제187조제1항, 제191조, 제192조제1항, 제193조제1항, 제194조제3항·제4항, 제195조제1항·제2항, 제196조제1항, 제209조제1항제7호의2·제15호 및 제2항제35호, 제2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7조제2항 단서, 제94조, 제183조제3항 및 제187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7조제5항, 제120조제2항, 제181조제3항, 제182조제2항 및 제186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17조제4항제1호가목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⑮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제11조, 제15조제5호, 제19조제1항·제2항, 제20조제2항·제3항 및 제21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제8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⑯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5호·제16호, 제3조제3항제1호, 제4조,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3조제2항·제3항,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제3항·제4항, 제26조제1항·제5항·제6항, 제37조제1항, 제47조제1항제1호, 제49조제2항, 제53조제1항·제2항, 제54조제1항, 제54조의2제1항·제2항, 제56조,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7조제1항제3호, 제5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제1항·제2항, 제5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제3항제1호, 제58조제6항, 제61조, 제62조제3항 및 제7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金融監督委員會”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항·제4항, 제6조제3항·제4항, 제10조제2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3제1항·제3항, 제1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4제3항·제4항, 제46조제1항제7호, 제50조제3항·제4항·제6항·제7항, 제50조의2제4

항, 제50조의3제8호, 제50조의6제4항제3호, 제50조의8제1항·제2항, 제5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제5항, 제5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의3제2항, 제5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7조제3항제3호, 제58조제4항·제7항 및 제69조의2제1항·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4조제2호,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5호, 제25조제5항, 제26조제1항, 제26조제4항, 제36조제1항, 제39조제3호, 제45조 및 제49조제1항제3호 중 “財政經濟部令”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50조의6제4항제1호가목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0조의6제4항제1호라목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⑰ 상호저축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라목, 제10조의2제4항·제5항, 제12조제6항·제7항, 제12조의2제2항·제3항, 제18조제1호, 제22조의3제4항제3호, 제22조의4제1항·제2항, 제3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의4제1항·제2항, 제38조의5제1항·제2항, 제38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의6제2항, 제38조의6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의6제3항제2호, 제38조

의7제1항·제2항·제3항, 제40조제1항제3호·제5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항, 제6조제1항·제2항·제3항, 제6조의3,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2제1항제1호·제2호, 제10조의2제2항, 제10조의2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제9호, 제15조, 제17조제1항, 제18조제2호·제4호, 제18조의2제1호, 제22조제1항·제2항, 제2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의2, 제23조의1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의11제3항·제4항·제5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의3제4항, 제24조의4제2항, 제24조의5제7항·제8항, 제24조의6제1항, 제24조의7제1항, 제24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의8제2항, 제24조의9제3항, 제24조의10제1항·제2항·제3항·제4항, 제24조의11제1항·제2항·제3항, 제24조의13제1항, 제24조의14, 제24조의15제1항·제2항, 제25조의2제2항, 제25조의3제2항, 제25조의6제3항, 제25조의9제1항, 제34조의2제1항·제2항·제4항·제5항, 제35조제1항·제2항·제3항, 제38조, 및 제40조제2항 중 “金融監督委員會”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2조의3제4항제1호라목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

다.

제22조의3제4항제1호가목, 제23조제1항 및 제24조의14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법률 제8522호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2항·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⑩ 외국환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5호 중 “金融監督機構의設置등에관한法律”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항,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0조 본문, 제11조제1항·제2항, 제13조제6항·제7항, 같은 조 제9항 전단·후단,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같은 조 제2호, 제17조, 제18조제1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1호·제5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제8항, 제20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호,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제2항, 제25조제1항·제2항, 제32조제1항제6호·제7호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財政經濟部長官”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항 제8호·제9호, 같은 조 제3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 재정경제부장관 ”을 각각 “ 기획재정부장관 ”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金融監督委員會”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⑱ 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의6, 제18조제5항·제7항, 제20조제1항제6호, 제20조의2제1항, 같은 항 제5호, 제2항, 제3항 전단·후단, 제20조의3제1항·제2항 및 제20조의5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8조제4항 및 제7항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8조제6항 중 “金融監督委員會”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법률 제6143호 産業發展法中改正法律 부칙 제2항 중 “金融監督委員會”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⑳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 제13조의4제1항·제2항, 제13조의5, 제13조의6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4조의2제1항제7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

융위원회”로 한다.

제13조의6제2항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㉑ 도시가스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2제1항 중 “ 재정경제부장관과 ”를 “ 금융위원회와 ”로 한다.

제43조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㉒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㉓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2항 중 “金融監督委員會”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㉔ 한국가스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金融監督委員會”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㉕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 중 “金融監督機構의設置등에관한法律”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㉖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5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㉗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2호, 제40조제2항제2호, 제52조, 제183조, 제226조제1항, 제226조제3항, 제242조제2항제2호 및 제245조제3항제2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20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과”를 “금융위원회와”로 한다.

㉘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제2항, 제37조제1항, 제39조의2의 제목·제1항·제2항 전단 및 제49조의2제1항제1호라목·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㉙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및 제37조제1항 중 “金融監督委員會”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㉚ 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3항 및 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㉛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의2제7항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92조제3항·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2항·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㉝ 농작물재해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제3호, 제8조제3항 및 제1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1조 중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㉞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財政經濟部長官과”를 “금융위원회와”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金融監督委員會”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財政經濟部長官에게”를 “금융위원회에”로, “金融監督委員會”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㉟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4호, 제20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23조제4항·제5항,

제28조, 제30조제1항 및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㉞ 법률 제8694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㉟ 전자금융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금융감독위원회(이하 “금융감독위원회”라 한다)”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39조제1항 중 “금융감독원(「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을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으로,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감독원장(「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을 “금융감독원장(「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으로 한다.

제41조제3항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

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로 한다.

제9조제4항, 제21조제2항·제3항,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제3항,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5항, 제29조제1항, 제31조제2항, 제32조제4호,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4조제2항·제3항, 제3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제5항·제6항,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3조제1항·제2항·제4항, 제44조,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6조제1항·제3항·제4항, 제48조 및 제5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㊱ 선박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 제30조제2항, 제44조제7항, 제45조의 제목·제1항·제3항 및 제60조제2항·제3항·제4항 본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5조제2항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㊲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3호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제7호나목 단서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금융위원회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제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제4조의4의 제목 “(재정경제부장관의 업무)”를 “(금융위원회의 업무)”로 하고, 같은 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금융위원회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금융위원회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④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3제2항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

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제3조제2항, 제3조의2제2항, 제15조제5항, 제17조제6항 및 제17조의4제2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3조제2항 및 제17조의4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각각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제5조제2항 및 제16조의2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8조제1항, 제13조제1항·제4항·제5항 및 제15조제3항 중 “金融監督委員會”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3조제6항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5조의4를 삭제한다.

제16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금융위원회에”로 한다.

④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財政經濟部長官과”를 “금융위원회와”로 한다.

제15조제3항 후단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金融監督委員會”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5조제2항, 제49조제1항, 제51조제1항·제5항, 제52조제1항, 제53조제1항, 제54조제2항·제3항, 제65조제17호·제24호 및 제66조제1항 중 “金融監督委員會”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7조 중 “「보험업법」 第76條第1項 및 第114條第2項·第3項의 規定은 組合의 解散에 關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보험업법」 第114條第2項의 規定中 “財政經濟院長官”은을 “「보험업법」 제69조제1항 및 제137조제2항·제3항은 조합의 해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업법」 제137조제2항 중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제51조제2항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㉔ 법률 제8790호 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제4호, 제8조제3항 및 제2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1조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㉕ 공인회계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47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각각 “금융위

원회가”로 한다.

제5조제5항, 제28조제2항, 제41조제3항·제5항, 제46조제3항 및 제52조의4제3항제2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6조의2제1항 중 “財政經濟部長官소속하”를 “금융위원회 소속하”로 한다.

제7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30조제2항, 제37조제2항, 제38조, 제48조제3항, 제52조의3제1항 및 제52조의4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각각 “금융위원회에”로 한다.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 제24조제3항, 제27조제4항, 제30조제3항, 제39조제1항, 제39조의2, 제47조제2항, 제48조제1항, 제52조의2, 제52조의3제2항, 제52조의4제1항·제3항 및 제52조의5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각각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제26조제4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52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하며,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㉖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4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④5 금융중심지의 구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3조제4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각각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금융위원회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④6 풍수해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제13조제2항, 제16조제3항 및 제3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9조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7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4제2항, 제41조의6제1항·제2항, 제41조의9제1항·제2항 및 제43조제1항제4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1조의9제2항 중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8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56조의2제5항부터 제7항까지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④9 방사선 및 방사선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제16조제4항 및 제19조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9조제3항 중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0 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및 제4항 중 “財政經濟部令”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財政經濟部長官”을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의2·제4호, 같은 조 제2항 본문·단서, 제16조제1

항 및 제2항 중 “財政經濟部長官이”를 각각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財政經濟部長官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제19조 중 “財政經濟部長官”을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3조제1항제6호 중 “財政經濟部長官”을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財政經濟部長官”을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財政經濟部長官에게”를 “금융위원회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財政經濟部長官”을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財政經濟部長官”을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財政經濟部長官에게”를 “금융위원회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財政經濟部長官”을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9조 중 “財政經濟部長官에게”를 “금융위원회에”로 한다.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財政經濟部長官”을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2조 및 제43조제1항·제2항 중 “財政經濟部長官은”을 각각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⑤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 중 “財政經濟部수”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財政經濟部長官”을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7조제2항제2호·제4호·제5호·제8호, 제21조제1항 및 제2항 중 “財政經濟部長官이”를 각각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財政經濟部長官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제24조 중 “財政經濟部長官”을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8조제1항제8호 중 “財政經濟部長官”을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1조제3항 중 “財政經濟部長官이”를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財政經濟部長官”을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財政經濟部長官에게”를 “금융위원회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財政經濟部長官”을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2조제1항 중 “財政經濟部長官”을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財政經濟部長官에게”를 “금융위원회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財政經濟部長官”을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3조 중 “財政經濟部長官에게”를 “금융위원회에”로 한다.

제44조 중 “財政經濟部長官”을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6조제2항 및 제47조제1항·제2항 중 “財政經濟部長官은”을 각각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⑥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제5항 중 “金融監督委員會”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㉔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3조제2항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8조제3항 전단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㉕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및 제3항 중 “財政經濟部長官”을 각각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제4조제4항 및 제5항 중 “財政經濟部令”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5조의2제6호 중 “財政經濟部長官”을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財政經濟部長官에게”를 “금융위원회에”로 한다.

제14조제1항·제2항 및 제4항 중 “財政經濟部長官은”을 각각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㉖ 한국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5호, 제89조제2항 및 제94조 전단 중 “金融監督委員

會”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88조제1항 중 “金融監督機構의設置등에관한法律”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89조제1항 중 “金融監督委員會”를 “금융위원회”로, “措置”를 “금융감독상의 조치”로 한다.

제91조 중 “재정경제부차관”을 “기획재정부차관 또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소관 사항에 한하여 열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92조제1항 및 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㉗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3조부터 제12조까지)을 삭제한다.

제13조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위원장인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장”을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제17조제4항 중 “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1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1조 중 “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의2(기록물의 보존기간) 법률 제6281호에 따라 설치된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기록물은 그 보존기간을 영구로 한다.

1. 위원회의 심의·조정에 관련된 기록물
2. 위원회가 정부, 금융감독위원회(중전의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예금보험공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공적자금의 관련기관으로부터 보고받아 심의한 기록물
3. 위원회가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함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등과 관련된 기록물
  - 가. 금융감독위원회, 예금보험공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관련 기관에 대한 보고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구
  - 나.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제출 요구
  - 다. 관계 기관에 대한 실지조사

제4장(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을 삭제한다.

㉞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제4조제3항·제5항·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 본문·제3항·제4항,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2조제1항·제2항 및 제14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각각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제4조제6항제3호 및 제7조제1항 단서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각각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및부실채권정리기금채무의 변경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

㉞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조의2제3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7조제1항·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

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㉟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7조제4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각각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금융위원회에”로 한다.

㊱ 신용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나목, 제7조제1항, 제7조제3항·제4항, 제8조제2항, 제8조의2, 제39조제3항, 제42조, 제69조제2항, 제75조제2항, 제83조, 제83조제1항, 제83조의2, 제83조의3제1항, 제84조제1항, 제84조제3항·제4항, 제8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6조제1항·제2항, 제86조제4항·제5항, 제86조의2제4항·제5항, 제86조의3제1항, 제88조, 제88조의2, 제89조제3항·제4항, 제96조제1항·제2항, 제9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98조 중 “金融監督委員會”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1조제2항, 제47조제2항, 제47조제5항, 제76조의3제4항제1호라목, 제76조의3제4항제3호, 제78조제5항, 제81조제4항, 제83조의3제2항, 제

86조제1항제5호, 제86조의4제1항·제2항, 제86조의4제5항·제6항, 제86조의5제6항, 제89조제5항, 제89조제8항, 제99조제2항제4호 및 제10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76조의3제4항제1호가목 중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㊲ 대부업의 등록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및 제16조제1항·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㊳ 새마을금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74조제6항 중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을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㊴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6호 중 “금융감독위원회의 위원장”을 “금융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한다.

㉔ 산림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54조제4항, 제54조제5항, 제92조제2항 및 제123조제1항 중 “金融監督委員會”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19조제2항제3호 중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을 “금융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한다.

㉕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5호 중 “금융감독위원회의 위원장”을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㉖ 住宅抵當債權流動化會社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金融監督委員會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金融監督委員會”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중 “金融監督委員會”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항·제3항제6호·제4항 및 제5항 중 “金融監督委員會”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金融監督委員會”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金融監督委員會”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5조 중 “金融監督委員會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金融監督委員會”를 “금융위원회”로, “金融監督機構의設置등에관한法律”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金融監督委員會”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7조 중 “金融監督委員會”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金融監督委員會”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0조 중 “金融監督委員會”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金融監督委員會”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金融監督委員會”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金融監督委員會”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㉗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6호 중 “금융감독위원회의 위원장”을 “금융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한다.

㉘ 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제2조제2항, 제7조제1항·제2항,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조제1항·2항, 제12조, 제13조, 제16조제2항, 제18조제1항제8호·제3항, 제28조제1항, 제35조제2항, 제3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8조제1호·제8호, 제39조, 제41조제1항·제3항, 제44조, 제4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6조, 제51조, 제5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3조제1항·제2항, 제54조제1항, 제55조제1항·제2항, 제56조제3항, 제5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0조제1항·제2항, 제61조제2항, 제64조, 제65조제2항 및 제69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중 “金融監督委員會”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6조의2제2항·제3항·제5항, 제16조의3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6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의4제5항, 제23조의3제4항제1호라목·제3호, 제35조의2제5항, 제35조의3제1항·제4항, 제35조의5제1항·제2항, 제37조제7항·제8항, 제48조의2제1항·제2항, 제52조제1항 단서, 제65조의2, 제65조의3, 제65조의4제1항, 제65조의5제1항·제2항, 제65조의6제1항·제2항, 제65조의7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5조의8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5조의9제1항·제3항 및 제69조제1항제4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조제1항, 제18조제1항제7호, 제23조의3제4항제1호가목 및 제44조

중 “金融監督機構의設置등에관한法律”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㉞ 신탁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항, 제3조의2, 제6조제2항, 제8조제1항, 제8조제2항 본문·단서, 제8조제3항, 제10조제3항, 제12조의2제2항, 제13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15조의2제3항, 제17조의6, 제17조의8제4항, 제17조의9, 제17조의10제2항, 제19조 본문·단서, 제20조제2항, 제24조의2, 제24조의3제1항·제2항, 제25조, 제25조의2제1항 본문, 제25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5조의3, 제26조의2제1항·제3항, 제28조, 제29조의2 본문, 제29조의4제1항·제2항, 제29조의6제1항·제2항, 제31조제1항, 제33조제1항·제2항, 제34조, 제35조, 제36조 본문·단서, 제37조, 제37조의2, 제37조의3, 제41조제3호 및 제4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金融監督委員會”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조제4항, 제12조의4제1항·제2항, 제16조제1항, 제17조의2제2항, 제25조의2제1항 단서 및 제37조의5제1항·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㉟ 擔保附社債信託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제3항 본문·제5항·제6항, 제7조,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단서, 제9조, 제10조 본문, 제10조의2, 제11조제1항·제4항, 제42조제2항, 제78조제1항, 제83조제1항, 제86조제1항 단서, 제87조, 제88조, 제89조제2항·제3항, 제93조제2항, 제94조, 제96조, 제97조, 제104조제2호, 제10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金融監督委員會”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5조제3항제5호 중 “財政經濟部令”을 “총리령”으로 한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4조의3, 제7조, 제8조제1항·제4항, 제9조제1항제1호, 제10조, 제12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호, 제17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21조, 제24조제2항, 제25조제1항·제4항·제5항·제7항, 제29조제1항·제5항, 제30조, 제32조제2항제10호 및 제35조제4항·제5항·제6항 중 “金融監督委員會”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9조의2제4항·제5항 및 제9조의3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항 중 “財政經濟部長官은”을 각각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제31조 중 “財政經濟部長官 또는 金融監督委員會”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法律 第5378號 信用情報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法律中改正法律 부칙 제4조제2항·제3항 및 제5조 중 “金融監督委員會”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 휴먼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3항제5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8호 및 제4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각각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제10조제3항제4호 중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제2호 및 제34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각각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제20조제1항 본문·제2항 및 제34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각각 “금융위원회에”로 한다.

제20조제3항,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5항 및 제34조제4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각각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법률 제8574호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  
 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한다.

㉓ 한국산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14조, 제18조제8호, 제24조 전단, 제37조제3항 중 “財  
 政經濟部長官”을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財政經濟部長官”  
 을 각각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중 “財政經濟部長官이”를 각각 “금융위원회  
 가”로 한다.

제18조제3호다목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37조제2항·제6항 중 “財政經濟部長官에게”를 각  
 각 “금융위원회에”로 한다.

제21조, 제37조제5항 및 제49조제2항 중 “財政經濟部長官은”을 각각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제43조제1항제2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  
 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이 제1항제2호에 따른 승인을 함에 있어서는  
 한국산업은행의 경영 건전성과 효율적인 업무 수행 등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잔여이익금 처리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4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7조(감독) 금융위원회는 한국산업은행에 대하여 이 법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감독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으며,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을 수  
 행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제48조제2항 및 제3항 중 “財政經濟部長官은”을 각각 “금융위원회  
 는”으로 한다.

제49조제1항, 제54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財政經濟部長官 또  
 는 金融監督委員會”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54조제2호 중 “제47조 제1항 및 제2항”을 “제47조”로 한다.

㉔ 중소기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제28조, 제33조제9호 및 제37조제2항 단서 중 “主務部  
 長官”을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6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26조제1항 중 “主務部長官”을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같  
 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主務部長官이”를 각각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제35조제1항 및 제35조의2 중 “주무부장관”을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7조제3항 및 제49조 중 “主務部長官에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主務部長官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감독하며”를 “감독하고”로, “있다”를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을 수행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로 한다.

제46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46조제3항, 제48조제1항 및 제3항 중 “主務部長官 또는 金融監督委員會”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제2항”을 “제1항”으로, “조치를 주무부장관에게 건의하거나 당해 위반행위의 중지 및 경고 등 적절한 조치를”를 “조치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및 경고 등

제46조제5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제2항”을 “제1항”으로, “업무집행의 정지 또는 해임을 주무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으며,”를 “업무집행의 정지, 해임 및”으로 한다.

제46조제6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46조제7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8조제4항 중 “主務部長官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0조제2항제2호·제4호, 제13조제1항 후단 및 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각각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제13조제1항 전단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14호, 제45조제7항, 제48조제1항, 제50조제3호, 제54조 및 제59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3조제1항·제3항·제4항, 제24조제1항·제2항, 제24조제3항제6호, 제2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28조제2항, 제29조제1항, 제32조제2항, 제44조, 제60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6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50조제2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이 제1항제2호에 따른 승인을 함에 있어서는

공사의 경영 건전성과 채권유동화, 신용보증 등의 업무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배당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56조제3항 및 제59조의3제3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총리령”로 한다.

제56조제4항 및 제59조의3제4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48조제2항 및 제59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금융위원회에”로 한다.

제60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감독하며”를 “감독하고”로, “있다.”를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업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을 수행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
  2. 제1호와 관련된 부수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
- 제60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61조제2항 및 제62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제60조제4항 중 “조치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건의하거나 당해 위반행위의 중지 및 경고 등 적절한 조치를”을 “조치를”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당해 위반행위의 중지 및 경고 등

제60조제5항 중 “업무집행의 정지 또는 해임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으며, 경고 등”을 “업무집행의 정지, 해임 및 경고 등”으로 한다.

제6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중 “제2항”을 각각 “제1항”으로 한다.

제60조제3항 및 제61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㉞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2항제1호 중 “金融監督委員會”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㉟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 및 제41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㊱ 농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 제63조제4항·제5항, 제120조제2항, 제162조제2항·제4항 및 제16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金融監督委員會”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62조제1항 중 “財政經濟部長官과”를 “금융위원회와”로 한다.

제162조제6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㉟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6항, 제66조제4항·제5항, 제126조제2항, 제165조제3항, 제169조제2항,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7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72조제1항제5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44조제1항제4호 중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을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제169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 및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㊱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4항제2호 중 “財政經濟院長官이”를 각각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제8조제2항, 제9조, 제10조제1항, 제11조, 제12조, 제14조 및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財政經濟院長官은”을 각각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전단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한

다.

㊲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㊳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7항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4제1호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㊶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金融監督機構의設置등에관한法律”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개정이유

대형화·겸업화·국제화 등 급격히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재정경제부의 금융

정책기능과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정책기능을 통합하여 금융위원회  
원회를 설치하고, 금융정책과 감독집행사항을 명확히 구분하여  
금융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금융산업 선진화의 발전 기  
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금융위원회의 설치(법 제3조)

금융위원회를 설치하여 금융시장 안정에 관한 사항, 금융에 관  
한 법령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금융기관 감독과 관련한 규  
정의 제·개정, 금융기관의 설립·합병 등의 인허가, 금융감독  
원에 대한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나. 금융위원회의 구성(법 제4조)

금융위원회를 9인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부위원장 외에 2  
명의 위원을 상임위원으로 함으로써 금융위원회가 결정해야 할  
사안에 대한 심의·의결 기능을 내실화 함.

다. 금융정책기능과 감독집행기능의 분리(법 제29조제2항)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금융감독원의 원장을 겸임하던 것을 대통  
령이 금융감독원의 원장을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금융정책기능과  
감독집행기능을 명확히 구분하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도  
록 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이 명 박 인

2008년 2월 29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박 명 재  
행정자치부 장 관

●법률 제8864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제16호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9조 중 “行政自治部長官”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行政自治部長官”을 각각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및 제3항 중 “行政自治部長官”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  
으로 한다.

제57조제4항 중 “行政自治部長官에게”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하  
고, 같은 조 제5항 중 “行政自治部長官”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70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行政自治部令”을 각각 “행정  
안전부령”으로 한다.